

#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3. 6. 9.

기획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손범구 의원 등 7명(이진환, 장호섭, 박정환, 도하석,김장관, 권숙자)
- 발의일자: 2023. 5. 26.(금)
- 회부일자: 2023. 5. 26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6. 9.)

### 2. 개정이유

- 주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전달 등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통장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대학생인 통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대학생인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 확대(안 제6조제1항)
  - 【 “연 100만원” ⇨ “연 200만원” 】

### 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 법령 및 현행조례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
 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」
 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통·반 설치 조례」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3. 5. 26. ~ 6. 5.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액 중 현재 대학교 수업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장학금 지급실태를 고려하여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, 통장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함.
- 한편, 현행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개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장학금 정액지급 규정 마련 및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, 대학생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1년 4월 1일 의원발의로 전부개정한 바 있음.
- 본 개정안은 통장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금액의 현실화를 통해 통장의 지역사회 봉사자라는 궁지를 높이고 장학금 지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, 대구지역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학금 지급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## 6. 질의 · 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